

#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과 倭學譯官

洪 性 德

|                                 |                       |
|---------------------------------|-----------------------|
| I. 머리말                          | 1. 朝鮮의 對日交隣體制 改編背景    |
| II. 朝鮮後期 韓日外交使行 成立과 變化          | 2. 通信使行의 定例化 背景       |
| 1. 己酉約條 性格에 對한 基本 인식의 再考        | 3. 問慰行의 定例使節化         |
| 2. 國交再開 이후 日本의 對朝鮮使行에 對한 朝鮮의 認識 | IV.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과 倭學譯官 |
| 3. 朝鮮後期 朝鮮의 對日本 外交使行            | V. 맺음말                |
| III.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의 定例化           | 【토론속취문】               |

## I. 머리말

조선후기 한일관계는 ‘善隣友好’의 관계로 평가되고 있다. 고대 이래 이 시기만큼 두 나라가 상호 信義로서 교류한 적은 없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사실이나 상호인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때, 조선후기의 한일관계사는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다루어지지 않거나 발전적 방향의 규범으로 언급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조선후기 ‘誠信交隣’의 한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지만, 倭亂이라는 일본 침략과 ‘선린우호’가 곧바로 ‘강점’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조선후기의 한일관계 역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유약조(1609)가 조선후기 대일 외교체제의 기본형태라고 지적하면서도, 그 시기 일본의 대조선 외교교섭은 幕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마도의 자의적 행위로 평가하여 교섭재개의 의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둘째, 조선후기 한일간 외교사행체제에 대하여 조선의 대일사행에 대해서는 막부

장군 즉위를 축하하는 통신사행의 파견과 통신사행의 문화교류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대마도에 파견된 間慰行이나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의 구조에 대해서는 대등한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셋째, 1630년대 소위 일본의 ‘大君外交體制’ 성립과 조선의 대일정책변화 이후 외교사행의 개편에 대한 분석이 조선의 경우 북방의 위협에 대비한 남방의 안전만이 강조된 반면, 일본의 경우 柳川一件 이후 幕府의 직접 통제를 강조함으로써 그때까지의 朝鮮과 日本의 외교관계를 朝鮮과 對馬島의 사적관계로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넷째, 조선후기 한일관계사가 通信使와 倭館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두 나라 관계를 유기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향후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의 영역이 외교사행에 있어서는 통신사 이외에 間慰行과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절 특히 差倭의 정치 외교사적 규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에 유의하면서 본 발표에서는 조선후기 기유약조 체결이후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왕래한 외교사행의 성립과 1630년대를 전후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통신사행과 문위행의 정례사절 배경 및 과정에 대해 알아보며, 대일외교사행에 있어 왜학역관의 중요성을 보론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진지하게 검토된다면,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일본 역사교과서의 서술이 “국교회복과정에서의 宗氏의 역할만을 강조하여 일방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通信使를 將軍祝賀使節團으로 강조 일본의 우위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宗氏의 倭館이라는 표현으로 파생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한국의 지적<sup>1)</sup>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Ⅱ. 朝鮮後期 韓日外交使行 成立과 變化

조선전기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으로는 國王使, 諸巨酋使, 九州節制使, 對馬島主 歲遣送使·特送使 등이 있었다. 이 외교사행들은 임진왜란으로 파견이 중단되었다가 1609년 기유약조 체결로 복구되었다. 그렇지만 재개된 韓日外交使行은 전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日本의 渡航使節이 제한되고 조선의 외교사행 역시 대폭 축소되었

1) 孫承喆, 2002.11.9, <일본 역사교과서 고려·조선시대 기술의 왜곡실태 분석> 《한일관계사의 제문제》(한일관계사학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던 것이다.

## 1. 己酉約條 性格에 대한 기본인식의 再考

조선후기 약 270여년 동안 두 나라의 외교 관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틀로써 유지되어 온 己酉約條는 그것이 갖는 역사성과는 달리 축소된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기유약조가 조선전기 對馬島主와 수차에 걸쳐 맺어 온 약조(계해, 임진, 정미 등)들을 계승한 것이라는 사실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sup>2)</sup> 약조 체결의 주체가 對馬島라는 점이 강조되어 기유약조가 朝鮮과 對馬島間의 交易關係를 규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로날드 토비의 경우는 기유약조를 國交回復으로 평가하는 것은 약조의 의의를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 幕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나아가 그는 두개의 主權國家間의 ‘條約關係’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田代和生은 그러한 조선과 대마도와의 ‘私的’ 통교관계를 토대로 전개된 두 나라의 국교는 자연히 대마도에 의해서 유리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그것은 나가서 國書改竄으로 발전하였다고 논하였다.<sup>4)</sup> 그러나 閔德基는 ‘1609년 기유약조는 일반적으로 朝·日間의 교역 관계가 재개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체는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羈縻秩序 再編政策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sup>5)</sup> 하였고, 손승철 역시 ‘1609년 대마도와 기유약조를 맺어 臣下의 禮를 취하는 교역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기미관계에 의한 교린체제를 다시 부활시켰다.’라 하여<sup>6)</sup> 조선의 羈縻政策의 일환으로 기유약조의 체결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차이는 약조의 체결 주체와 내용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기유약조 체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對馬島에 대한 통제규정이면서 韓日關係의 기본 約條로 기유약조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기유약조를 通交貿易의 재개와 對馬島 統制策의 일환으로만 평가해 왔다. 그러나 기유약조에 대한 평가는 체결 과정에 이르는 조선의 대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2)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の研究》 下(吉川弘文館, 東京), 283 ; 田中健夫, 1959,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東京大出版會, 東京) 273

3) ロナルド・トビ, 1990, 《近世日本の國家形成と外交》(速水融外譯, 創文社, 東京) 43~45

4) 田代和生, 1981,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 東京) 51

5) 閔德基, 1987, <壬辰倭亂 以後의 朝日講和交渉과 對馬島> 《史學研究》 39, 201

6) 孫承喆, 1994, 《朝鮮時代 韓日關係史研究》(지성의 샘, 서울) 155

야만 한다. 왜냐하면 약조의 내용만 가지고 그 의미를 평가하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란이 끝난 뒤 조선의 대일정책은 국교 재개의 絶對不可에서 對馬에 대한 羈縻政策 결정 그리고 對幕府로의 政策旋回와 실패, 對馬羈縻政策를 통한 對幕府政策으로 변화하였다.<sup>7)</sup> 바로 이러한 대일정책의 연장선상에 기유약조가 놓여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回答兼刷還使의 파견에 앞서 마련된 대일정책에 관한 기본 지침<sup>8)</sup>들은 그러한 성격을 보다 분명히 말해 준다. 당시 일본이 다원적 통교 체제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변사의 회계에 의하면 조선의 대일외교의 상대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그것은 일본 幕府政權이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조선전기에 맺었던 일본 막부장군과의 관계 설정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조선은 幕府에 대하여 三浦開港과 諸鎮巨酋의 受職, 歲賜米, 對馬受職人 등의 한일 관계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기유약조가 체결될 즈음 조선의 대일정책이 기본적으로 조선전기와는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원적 통교 체제를 잘못된 규례로 규정하고 關白(幕府將軍)이 제도를 통합하여 호령이 한 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판단을 토대로 한 정책의 변화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조선이 대마도를 상대로 조선전기와 같은 형식의 약조를 체결한 것은 ‘羈縻關係에 의한 交隣體制’ 즉 대마도를 통한 對幕府 정책이라는 조선의 대일정책에 기인한 것일 뿐, 조선전기와 같이 다원통교책의 일환으로서 대마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일정책 수립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 막부정권의 대조선 정책 때문이기도 하다. 종전 직후 대조선 국교재개에 대한 德川幕府의 의도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대마도가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을 전담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마도는 1604년 유정의 訪日 이후 征夷大將軍의 직위에 오른 家康에 의해서 대조선 통교권을 인정받았다. 1604년 7월에 파견된 유정 일행을 교토에서 德川家康과 상견하게 한 공로로 대마도는 조선과의 통교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基肆郡 養父郡 내의 토지 2800석을 지급받았으며, 3년에 1번 參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sup>9)</sup> 일본의 대조선 외교정책의 전담자로서의 대마도의 위치는 1607년 回答兼刷還使의 방일 중에 執政 佐渡守 本多正信의 발언<sup>10)</sup>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

7) 洪性德, 1992, <17世紀 別差倭의 渡來와 朝日關係> 《全北史學》 15

8) 《선조실록》 39년 11월 경오·갑술·정축

9) <韓錄> 《通航一覽》 卷27, 朝鮮國部三

의 과정을 전제로 생각해 볼 때, 기유약조를 조선정부와 대마도주 사이의 통제책의 성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국간의 기본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약조를 체결한 對馬島主의 일본 내 위치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을 중시하고 그러한 양국간의 외교적 상황을 토대로 약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유약조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 체제를 규정한 약조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일본 내의 상황 여하에 관계없이 조선정부의 기유약조에 대한 입장은 국가간의 관계를 전제한 대마도주와의 통제규정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규정이 조선후기 대내 대일정책의 기본 규정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기유약조에는 국가간의 기본 규정(조약)의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 2. 國交再開 이후 日本의 對朝鮮使行에 대한 朝鮮의 認識

1609년 체결된 기유약조 속에서의 외교사행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기유약조에 규정된 외교사행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幕府를 제외한 통교가능자를 對馬島人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 둘째 日本國王使도 對馬島主의 文引을 지참하도록 한 것, 셋째, 特送船의 부활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처럼 기유약조는 일본의 對朝鮮 사절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외교사행으로는 日本國王使와 特送使를 규정하고, 경제적 시혜 차원의 通交貿易船으로는 歲遣送使와 受職人의 도항을 허용하였다. 일본국왕사의 경우 파견회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특송선은 총 20척의 세전선에 포함되어 최대 3 척까지만 도항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보면 조선은 외교업무 수행을 위한 외교사행으로 일본국왕사와 특송선을 상정하였으며, 외교대상을 德川幕府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국왕사는 일본의 幕府將軍이 보내는 사선이고, 특송선은 “關白의 명령을 받아 對馬島主가 파견한 배”<sup>11)</sup>로 3척 이내에서 ‘사건이 있으면 와서 보고하는’<sup>12)</sup> 외교업무의 성격이 강한 使船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교재개 이후 실제 일본에서 도항한 외교사행

10) “이제 講和의 일이 이루어졌으니, 源氏의 세상에 다시 무슨 원함이 있겠습니까? 이 뒤로 두 나라 사이에 서로 通할 일이 있으면 對馬島를 시켜 하소서”(慶湏, 《海槎錄》 하, 6월 11일 임인)

11) 雨森芳洲, 《送使約條私記》

12) 《扶桑錄》 정사년 10월 10일

은 모두 對馬島人이었다. 대마도가 일본의 對朝鮮 外交使節 파견 주체로 허용된 것은 1604년 유정이 德川家康을 만난 이후 대마도가 막부로부터 대조선 통교권을 전담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과 1607년 回答兼刷還使가 일본에 갔을 때 本多正信으로부터 향후 두 나라 사이에 통할 일이 있으면 對馬島를 시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정부 역시 1606년 家康의 국서를 가지고 온 橘智正에 대하여 "일본에서 차출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기는 하나 家康이 이미 國王이라 칭하고 그 서계를 가지고 오는 자"이므로 접대의 격을 높였다.<sup>13)</sup>

한편, 조선후기 日本國王使는 단절되어 渡航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국왕사의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고, 다만 일본국왕사도 대마도주의 文引을 지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幕府의 국왕사 파견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일본국왕사는 막부장군의 국서를 지참한 대마도의 외교사행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일본국왕사는 국교재개를 전후해서 1606년 請聘使, 1608년 報聘使, 1609년 約條講定使, 1616년 請聘使, 1622년 報聘使 등 총 5회 渡海하였으며 조선전기 일본국왕사보다는 못하지만 대마도 특송선보다는 후한 접대를 받았다. 이는 두 나라의 信義를 끊어버린 침략 전쟁과 '國王使'가 對馬島人이었다는 사실이 고려된 결과였다. 이들은 殿使倭, 國使 등으로 불리웠으며 將軍의 國書를 지참하였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받아 들여졌다. 국서를 지참한 대마도의 일본국왕사는 1622년에 단절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1629년 關白의 명령을 칭하고 온 玄方 일행의 上京을 허락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외교 사행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종래 國書를 지참하고 온 대마도인에 대하여 국왕사의 예에 준하는 접대를 해 온 조선이 국서를 지참하지 않고 단지 '關白의 命令'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마도인의 상경을 허락한 것이다. 이후 이 사례는 "그 뒤 국왕이 사신을 보내는 사례는 없어지고, 일이 있으면 대마도주가 관백의 뜻으로 차왜(差倭)<sup>14)</sup>를 정하여 보내었다."<sup>15)</sup>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差倭'가 일본국왕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 차왜는 기유약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이 변화함에 따라 조선으로부터 일본의 외교사행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은 대마도의 일로 도항한 '小差倭'와 幕府將軍家の 일로 도항한 '大差倭'로 구분되게 된다.<sup>16)</sup>

13) 洪性德, 1998, 《17世紀 朝・日外交使行 研究》(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2

14) 《度支志》 권18, 賓禮下에는 "關白의 뜻으로 大差倭를 보내었다"라 하여 차왜가 아닌 대차왜로 나온다.

15) 《增正交隣志》 권1, 接待對馬島人新定事例

16) 조선전기와 조선후기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의 연결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외교정책 방향의 변화와는 달리 그 실제적인 성격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교재개 이후 일본에서 건너온 외교사행들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은 분명하다. 즉 “日本國王(幕府將軍)의 명령”이 외교사행에 대한 판단 기준이었던 셈이다. 이는 조선 전기에 세견선이 제한된 뒤 대마도주가 ‘關白의 명령’을 받고 ‘特送船’을 보내자 그 접대를 허락했던 것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특송선의 歷史的 事實이 비록 일본국왕의 외교사행이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 일본국왕(關白, 幕府將軍)을 외교적 파트너로 생각했던 조선정부는 ‘關白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주장하는 特送船이나 大差倭를 여타의 사행과 동일하게 접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에 있어 외교사행체제를 거론할 때, 幕府將軍의 취임을 축하하는 조선의 國王使節(通信使)만을 이야기하고, 幕府장군의 명령으로 조선에 파견한 사행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설명하지 않는 것은 자칫 두 나라의 관계를 일본의 ‘優越的 對等’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조선의 막부 축하사절을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 幕府將軍이 朝鮮國王에게 직접 외교사절을 파견하지 않은 것은 對馬藩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한 일본 德川幕府의 대외정책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조선에 건너온 수많은 使行(年例送使, 임시사절인 差倭)들에 외교적 기능과 역할을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근대 국가간의 인적교류는 그 내면이야 어떻든 외면적으로는 국가간의 ‘外交’적 틀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 3. 朝鮮後期 朝鮮의 對日本 外交使行

반면,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使行은 약조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다. 조선전기의 경우에도 일본과 체결한 다양한 약조에 조선의 대일본 외교사행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점에서 기유약조는 조선전기의 약조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사행의 왕래라는 관점에서 조선시대 한일관계사를 이야기 할 때, 일본은 정치·경제적인 내부 요인에 의해 외교사절을 파견하였지만, 조선정부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파견 요청이 있을 때만 피동적으로 외교사행을 파견하는 근본적인

---

다. 대차왜에 대한 조선의 판단 즉 ‘幕府將軍의 명령’을 받고 조선과의 외교를 전담하는 대마도주가 보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 국왕사나 특송선 등과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洪性德, 1996, <朝鮮後期 日本國王使 檢討> 《韓日關係史研究》 6), 직접적인 연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러나 모든 대일본 사행이 그렇게 파견된 것은 아니다. 왜란이 끝난 후 기유약조를 체결할 때까지 파견된 4차례의 정탐사(1600년 金達, 1602년 全繼信, 1604년 惟政, 1606년 全繼信)는 일본의 파견요청 없이 조선에서 일본 내정 정탐과 피로인 쇄환 등을 위해 對馬島와 京都에 보내어졌다. 이들에 대해 조선에서는 ‘使行’이 아닌 ‘差人’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惟政의 서계를 지참하도록 하거나, ‘일개 승려’임을 강조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교재개 교섭에 조선정부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이 먼저 국교재개를 요청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었다.<sup>17)</sup> 그렇지만 조선의 필요에 의한 주도적인 ‘差人’의 파견도 기유약조 체결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약조 체결 이후 조선의 대일 외교사행은 일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江戸에 파견한 回答兼刷還使와 通信使, 對馬島에 파견한 問慰行(譯官使)이 있을 뿐이었다. 특히 조선국왕의 국서를 지참하고 가는 국왕사절의 경우 단순한 ‘사절파견 요청’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외교사행의 왕래에 있어 ‘사전 파견 요청’ 조건 이외에 조선이 파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서’와 ‘서계’가 조선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초기 回答兼刷還使의 경우 ‘幕府將軍의 國書’가 파견의 주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 조선정부가 回答兼刷還使의 파견 조건으로 ‘幕府將軍의 國書’를 고집한 것은 왜란 이후 일본 국내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확인과 일본의 최고통치권자와 조선국왕이 교류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왜란이 끝난 직후 조선은 일본의 政勢變化를 주시하고 있었다. 만약 德川家康이 병들어 죽고 일본에 전쟁이 일어나 秀賴가 다시 政權을 장악하게 되면 使臣의 진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선조의 질문<sup>18)</sup>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정세에 대한 조선의 불안은 회답사의 파견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607년 윤6월에 여우길 등이 귀국하는 도중에 赤間關에서 올린 치계를 받고 ‘듣건대 秀吉의 자식 秀賴가 옛 京城(京都)에 있다고 한다. 平氏를 멸망하였다는 말은 경솔히 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그들의 사정은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그간의 곡절을 알기 쉽지 않다.’<sup>19)</sup> 선조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은 秀賴의 생존해 있는 한 일본의 정국은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豊臣政權에서 德川政權으로의 변화에 대한 조선의 신중함은 일본 정세를 선명하게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고 결국에는 對日本(幕府)정책의 신속하고 분명한 결정을 유보하게 하였다. 아울러 이후 조선정부가 德川秀忠이나 家光의 國

17) 洪性德, 1998, <앞의 학위 논문>

18) 《선조실록》 39년 11월 경오·갑술·정축

19) 《선조실록》 40년 윤6월 경인

書에 ‘日本國王’을 고집하게 하는 한 요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정부는 對馬島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마도의 행동에 대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묵인하였다.<sup>20)</sup> 왜냐하면 대마도주에 의해 쇄환된 피로인들의 일본 내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대마도뿐이었고, 기본적으로 조선정부는 王道의 도리상 夷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국교재개와 관련한 대마도의 자의적 교섭이나 國書僞作은 조선정부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604년 惟政을 만난 家康은 서계를 만들어 보내려 한 것이나,<sup>21)</sup> 德川家康에 보내는 조선의 國書에 ‘日本國王’이라 써있어야 한다<sup>22)</sup>는 주장 등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조선의 國王使節을 일본에 불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對馬島에 의한 國書의 僞造說이 설령 타당하다고 해도 이 시기에 德川家康이 대마도의 대조선 교섭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는 등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德川家康을 접견한 惟政이 本多正信, 承兌 등을 만나 ‘和好之事’를 의논하였으며,<sup>23)</sup> 1차 回答兼刷還使의 파견시 역시 이들과 국서에 관한 문제를 포함 피로인 쇄환 문제 등을 협의하였고,<sup>24)</sup> 대마도주 宗씨의 家臣인 柳川調興이 1613년 家康을 알현한 뒤 그 측근에서 공사의 일을 보고 있었기<sup>25)</sup> 때문이다. 17세기 초 對馬島의 이중적 외교행각을 對馬島만의 독자적 행동으로 돌리기에 당시 두 나라가 처해 있는 대대외적 정세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때문에 일본의 대조선 관계 역시 德川幕府 정권이 확고하게 자리잡아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마도를 통한 대조선정책의 성격을 재평가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답사의 파견을 즈음하여 조선정부가 바라 본 교린관계의 방향은 일본의 정세 변화를 받아 들여 새로운 체제를 꾸리려는 의도와 그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만주의 신흥 정치세력으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여진족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동북아시아에 또 다른 국제관계의 재편이 도래

20) 1606년 橘智正이 가지고 온 德川家康의 국서에 대한 선조의 판단과 回答兼刷還使의 파견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선조실록》 39년 12월 무오).

21) 《선조실록》 39년 5월 갑신

22) 《선조실록》 39년 5월 기묘, 39년 3월 계해

23) 《通航一覽》 권27, 314~319쪽

24) 慶暹, 《海槎錄》

25) 荒野泰典, 1982, <大君外交體制の確立> 《鎖國》(有斐閣, 東京)

할지도 모른다는 외교적 대응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南倭北虜’라는 17세기 초의 동북아정세가 가지는 세력 균형의 유동성과 조선의 이러한 대일정책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仁祖反正 이후 이런 일련의 대일본 외교정책은 변화하게 된다.

### Ⅲ.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의 定例化

1630년대를 거치면서 조선은 일본에 파견하는 외교사행을 幕府將軍에게 보내는 通信使行과 對馬藩에 파견한 問慰行으로 定例化한다. 두 나라의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새로이 개편된 양국관계는 東萊府-對馬藩의 외교실무체제와 통신사행 → 德川幕府, 문위행 → 對馬島主의 외교사행시스템으로 구조화하였다.

#### 1. 朝鮮의 對日交隣體制 改編背景

1630년대를 전후해서 두 나라의 외교사행체제는 변화하게 된다. 기유약조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절은 差倭의 定例化로 변하였으며, 조선은 조선전기 일본에 파견한 각 지역에 파견한 다양한 종류의 사행을 일본막부에 보내는 ‘通信使行’과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問慰行’의 이중체제로 조정하였다. 이런 변화가 조선과 일본의 상호 외교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17세기 초엽 조선이 대일교린체제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인조정권의 성립 이후 시행된 대명의리 중심의 대외정책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인조반정의 주된 명분은 殺兄弟, 廢母后 등 패륜적인 행동과 <父母之恩>을 배반하고 오랑캐와 상통하여 禮義之風을 없애버리고 三綱을 일소하였다는 것이었다.<sup>26)</sup> 그러나 인조반정은 광해군대 대북정권의 정치운영이 봉당정치의 질서에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부 서인세력의 정권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sup>27)</sup> 반정명분

26) 《인조실록》 원년 3월 갑진, 15년 1월 계해

27) 吳洙彰, 1985, <仁祖代의 政治勢力의 動向> 《韓國史論》 13 및 禹仁秀, 1991, <朝鮮 仁祖代 政局의 動向과 山林의 役割> 《大丘史學》 41 참조.

역시 반정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기 위하여 제시된 것일 뿐, 새로운 사회질서의 수립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정권초기 수차례 일어난 고변과 모반은 이와 같은 반정정권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며,<sup>28)</sup> 1627년의 정묘호란은 반정명분을 와해시켰다. 후금의 침략 이후 인조정권은 반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후금과의 통호를 그들 자신이 맺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대명의리를 앞세운 인조정권의 대외정책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배척의 대상이었던 후금과의 교린관계로 나타났다. 이후 인조대의 대외정책은 현실과 명분이라는 이율배반적 요소를 내포하면서 진행되었고, 대일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둘째, 기미대상으로서만 존재해 있던 여진족이 교린국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대일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직후 만주의 여진은 1583년에 거병하여 세력을 확장시켜 나간 建州女眞(遼河支流 渾河유역)과, 海西여진(松花江유역), 野人여진(두만강유역) 등이 각각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전기와 같이 여진에 대한 羈縻政策으로 일관하였으며, 주로 忽賊(해서여진)을 중심으로 그 정책을 시행하였다.<sup>29)</sup> 따라서 기미정책의 시혜(職帖발급과 開市허용)는 홀적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건주여진의 누르하치가 해서여진인 哈達(1599)과 輝發(1607) 등을 멸망시키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자 조선정부는 홀적을 중심으로 한 대여진 기미정책을 변화시켰다. 즉 1601년 누르하치의 직첩요청을 거부한 조선은 1605년 누르하치의 國書에 두만강 僉節制使의 명의로 답서케하고, 1609년부터는 면포를 지급하다가 1617년에 이르러서는 祿俸을 지급하는 등 건주여진을 기미대상으로 끌어들었다.<sup>30)</sup> 그러나 건주여진이 1616년 후금을 세우고, 1618년 요동지방을 공략하는 등 동북아 국제질서의 주요한 전략적 지위를 점하게 되자, 조선은 후금의 국서에 지방관으로 하여금 답하게 한 종래의 태도를<sup>31)</sup> 바꾸어 國書를 보내기로 결정하는 등 <交隣之國>으로서의 건주여진, 후금을 대하기 시작하였다.<sup>32)</sup> 정묘호란을 치룬 인조정권 역시, “事大와 交隣은 각각 길이 다르다. 지금 우리가 너희 나라(후금)와 和議하려는 것은 이른

28) 우인수, 1991, <위 논문>, 3~7

29) 이 시기 조선의 對女眞 정책에 대해서는 서병국, 1970, <宣祖時代女眞交涉史研究>(교문사, 서울)와 1990,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국사관논총》 14, 서울) 156~168 및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한국사> 29 211~234 참조.

30) 《사대문궤》 권46, 만력 33년 11월자 국서; 《광해군일기》 원년 4월 임오, 9년 4월 을미

31)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5, <한국사> 29, 234

32) 《광해군일기》 14년 2월 신묘

바 交隣이고 皇朝를 섬기는 것은 이른바 事大이다”<sup>33)</sup>라 하여 반정의 명분을 합리화하고 교린의 나라로서 후금을 인정하였다. 더욱이 明의 年號인 <天啓>의 사용을 반대한 후금의 요청에 조선정부는 비록 揭帖의 형식이긴 하지만 對後金 외교문서에 明의 연호를 쓰지 않았다.<sup>34)</sup> 羈縻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건주여진(후금)에 대한 조선의 정책이 이와같이 교린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미정책을 통한 대일 교린정책 역시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셋째, 결정 여하에 따라 대마도를 매개로 한 조선의 대일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 일본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란이 끝난 이후 柳川家の 외교적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던 조선정부는 柳川調興과 宗義成의 불화가 알려진 이듬해, 關白의 죽음을 조위하기 위해 譯官을 대마도에 보내어 國書改作 발각사건의 진행과정을 파악하였고, 1634년에는 關白이 대마도주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한 馬上才 파견을 허락하여 그 결과를 조사케 하였다. 1635년 마침내 德川幕府는 대마도주의 무죄를 선포한 뒤, 外交儀禮(大君號, 日本年號의 사용)를 정비하고 以酌庵輪番制(幕府의 외교문서 관리)를 실시하는 등 대조선 외교정책을 ‘統一的 外交關係’<sup>35)</sup>로 변화하여 幕府의 직접통제에 의한 대조선 외교·무역 관계를 성립시켰다. 조선이 柳川事件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은 혹 이 사건이 對馬島主의 패배로 종결될 경우, 대마도를 매개로 한 대일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부의 대조선 정책이 개편되자 조선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일정책을 수립해야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놓고 볼 때, 조선의 대일정책은 인조정권의 명분외교로부터 실리외교로의 정책전환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회답겸쇄환사가 아닌 통신사행의 파견 결정이나 기유약조 이후 문제를 드러낸 일본의 送使에 대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 그리고 무역선으로 변질된 특송선을 대체할 차왜의 도항 묵인 등은 반정초기 명분론에 급급했던 인조정권이 후금의 성장에 따라 실리적인 외교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립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일본 德川幕府의 대조선 외교체제의 개편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조선의 대일본 외교사행이 通信使行과 問慰行으로 정례화하는 배경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한다.

33) 《인조실록》 5년 2월 임인

34) 《인조실록》 5년 2월 갑진·무오·기미·경신

35) 田代和生, 《앞 책》, 116~144

## 2. 通信使行의 定例化 背景

1607년부터 재개된 조선의 國王使節 파견은 1636년 이후 그 이름이 통신사로 바뀌어 1811년까지 지속되었다. 回答兼刷還使와 通信使는 편성 체계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국왕사절’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통신사행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러나 ‘回答兼刷還使’는 德川장군이 ‘日本國王’이라 쓴 國書를 먼저 보내와 使臣의 파견을 요청하면 조선이 그에 ‘回答’하고 아울러 피로인의 쇄환을 위해 일본에 파견한 국왕사절의 명칭으로써 信義를 통하는 ‘通信관계’를 지향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1636년 통신사행의 파견은 조선정부가 ‘通信之國’으로서 일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

1636년 2월 차왜 橘成供이 伴從 3명을 데리고 信使 파견을 요청하는 서계를 지참하고 도래하였다. 조선은 경상도 都事로 하여금 京接慰官을 칭하여 접대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 달 3월에 곧바로 신사 파견을 결정<sup>36)</sup>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결정 과정에서 첫째 결정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둘째 <回答使>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았고, 셋째 信使 파견과 남쪽의 안전을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回答兼刷還使의 파견 결정에서 對日정책과 對明·淸(女眞)정책의 상호 연계는 당시 대외정책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었으므로 재삼 논의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파견 결정이 한 달 남짓한 기간 사이에 내려진 이유와 왜 ‘回答使’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1607년 임란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국왕사절을 파견한 조선정부는 1617년, 1624년 파견결정시에 어떠한 형식이든 ‘회답사’임을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나 1636년 국왕사절의 경우 종래와 같이 ‘회답겸쇄환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물론 두 나라의 信義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通信使’를 보낸다거나 사행의 명칭을 ‘通信使’로 한다는 등의 논의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復命時의 기록에 通信使 任紘, 副使 金世濂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sup>37)</sup> 1636년의 대일 국왕사절이 通信使로 불리웠음은 확인된다. 회답을 고집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 온 信使請來差倭가 ‘關白의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이다.

關白(幕府將軍)의 명령을 중시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對馬島主의 외교적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일본의 對조선 외교 창구로서의 대마도에 대한 외교적 지위의 확인이었다. 조선이 將軍의 명령을—國書의 지참여부와 관계없이—중

36) 《변례집요》 권18, 信使.

37) 《인조실록》 15년 3월 무신

시한 것은 1629년 사행에서도 확인된다. 1629년 당시 조선은 정묘호란 직후라는 정치적 혼란기에 있었고 강제된 後金과의 對等交隣 관계의 체결은 대일정책에 있어 비교 우위적 교린 체제를 고집할 수 없게 만들었다. 1629년 亥方의 상경을 허락한 것<sup>38)</sup>은 인조정권의 대외정책이 정묘호란 이후 명분만을 앞세운 反政初의 비현실적 외교론에서 명분론을 전제한 현실적 외교론으로 선회한 결과이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변화에 ‘南과 北이 서로 침노하고 있어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싸 짊어지고 돌아가 버리고 나면 또 무슨 간특한 피를 부릴지 알 수가 없어서 앞으로 무사하리라는 것을 감히 다짐하여 말할 수 없다.’<sup>39)</sup> 保衛論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실적 외교론의 전개가 곧 幕府와의 직접 교섭을 통한 교린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란이 종결된 이후 對馬島를 통하여 對日관계를 유지하려는 인조정권의 대일정책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1632년 幕府將軍의 죽음에 대하여 1617년 回答兼刷還使의 例에 의거하여 倭譯을 대마도에 보내어 弔慰하도록 결정한 것이나 1631년 보고된 柳川事件의 내용과 결과에 민첩하게 대응한 것 그리고 馬上才의 요청에 즉각 부응하여 對馬島主가 幕府에 대하여 자신의 외교적 능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 등은 대일정책에 있어서 대마도를 매개로 위치 지우려는 조선의 의도에 따른 결과이었다. 1635년 幕府의 對조선 정책에 있어 대마도주의 위상을 확인한 조선이 이듬해 통신사의 파견을 쉽게 결정한 것 역시 이러한 대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630년대에 들어와 조선의 교린정책(對日, 對後金)에 또 다른 변수가 돌출되었다. 1631년 1월부터 시작된 후금의 예물 감소에 대한 트집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春信使 朴蘭英이 지참한 春季方物을 후금이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1632년 7월 후금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종전보다 10배에 이르는 방물의 액수를 임의로 정하여 이를 어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1632년 9월 후금은 다시 秋信使의 예물을 받지 않고 四大官(평안감사, 평안병사, 황해병사, 개성유수)이 後金使臣의 迎送禮를 행하도록 요구하였다. 11월에 胡差 일행이 제시한 방물의 物目은 전년 庫爾纏(骨者)이 정한 액수보다 거의 10배나 늘어난 것이었다.<sup>40)</sup> 이러한 후금의 요구는 ‘兄弟之國’에서 ‘父子之國’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후금에 대한 조선의 臣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君臣관계로의 재편 의도는 1636년 2월 胡差 龍骨大·馬夫大 등이 西撻의 大將 47인

38) 《인조실록》 7년 4월 무자

39) 《인조실록》 7년 4월 을사

40) 金鐘圓, 1995, <정묘호란>, 《한국사》 29(국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255~256

과 次將 30인, 從胡 98인을 거느리고 나오면서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龍骨大 등은 후금이 元나라의 옥새를 차지함에 서달의 여러 왕자들이 귀국과 의논하여 大號를 올리고자 差人을 보냈는데 이들만 보낼 수 없어서 함께 온 것이라고 하면서 金國執政八大臣과 金國外藩蒙古의 명의로 朝鮮國王에게 보내는 서계 3통을 바쳤다.<sup>41)</sup> 이것은 金國의 執政과 朝鮮國王을 대등관계로 놓고 조선을 外藩國의 반열에 두려는 의도로써 後金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질서의 재편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後金의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조선 내에서는 장령 홍익한의 상소<sup>42)</sup>를 시작으로 館學儒生, 弘文館, 司諫院 등의 斥和宣傳의 주장이 강하게 일어났다.<sup>43)</sup> 조선의 絶和 논의가 활발해 지고 지참 國書가 거부당하자 龍骨大는 곧 바로 귀국해 버렸다. 이에 司諫院은 싸우고 지킬 계획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고 3월 1일 인조는 八道에 하유하여 충의로운 선비는 각기 있는 책략을 다하고 용감한 사람은 종군을 자원하여 어려운 난국을 구제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였다.<sup>44)</sup> 같은 달 7일 絶和와 방어의 일에 대하여 평안감사에 보내는 諭書가 후금의 사신에게 빼앗기고 4월 국호를 淸으로 바꾼 太宗이 ‘大清皇帝’를 칭하면서 朝鮮을 ‘너희 나라(爾國)’라고 한 國書를 춘신사 나덕헌과 회답사 이곽의 귀국편에 보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과 후금의 사이에는 외교권의 개편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戰雲이 감돌게 되었다.

이와 같이 1636년 조선의 통신사행 파견 결정은 이러한 동북아의 외교권 재편 흐름 속에서 내려졌다. 三宅英利는 이에 대하여 ‘당시의 대일정책은 후금과의 위기감 속에서 모색되었고, 남북대비의 균형 속에서 조선반도의 안전의 방책으로 통신사가 고려되었으며, 후금과의 兄弟盟約 더욱이 明과의 전통적인 宗冊盟約이라는 二重同盟의 복잡한 국제 사정에 쫓기고 있었고, 秀吉 침략군의 피해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으며, 官人王朝의 기반인 量田을 비롯한 많은 내정 문제도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sup>45)</sup> 그러나 ‘북방에 대한 남방의 안전과 내정의 불안’이란 논의 속에는 후금이 1631년 이후 제기해 온 외교권 재편과 그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 회색되어 중시되고 있지 않다. 단순히 남방 안전의 보장 보다는 후금의 군신관계 요구에 직면한 조선이 교린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에의 통신사행 파견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은 후금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이유를 정묘호란 이후 羈縻之策에 의한 궁여책으로 체결된 교린 관계에 있

41) 《인조실록》 14년 2월 신묘, 정유

42) 《인조실록》 14년 2월 병신

43) 《인조실록》 14년 2월 병신, 정유, 경자

44) 《인조실록》 14년 2월 기해, 3월 병오

45) 三宅英利, 《앞 책》, 254·273

었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對후금 교린 정책의 실패(후금의 稱帝와 臣屬의 요구)는 事大交隣을 근간으로 한 建國 이래의 對外政策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對日 對等交隣關係의 회복은 무너져 가는 대외정책의 근간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였다.

### 3. 問慰行의 定例使節化

問慰行은 조선후기 對馬島主 및 關白의 慶弔事를 문위하기 위해 대마도에 파견된 문위역관 일행을 가리킨다. 문위행의 기원은 경조사를 문위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 敬差官 일행과 비슷하며, 역관이 임명되었다는 점에서는 1397년 파견된 朴仁貴가 처음이다. 그렇지만 倭學譯官을 正使로 해서 경조사를 위문하기 위해 파견된 사례는 1461년 皮尙宜가 처음이다.

《증정교린지》 권6, <문위행>조는 국교재개에 대한 家康의 뜻을 정탐하기 위하여 1606년 파견한 왜학역관 全繼信을 문위행의 시초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계신이 왜학역관이었던 사실은 《증정교린지》를 제외한 다른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전계신이 왜학역관이었다고 한다면 조선후기 正使로 대마도에 파견된 최초의 외교사행은 1606년이 아니라 1602년이어야 할 것이다.<sup>46)</sup> 그렇다면, 조선후기 ‘역관’이 정사로 임명되어 대마도에 파견된 최초의 사행은 누구인가? 《增正交隣志》 권6, <問慰行>조는 문위행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1606년의 왜학역관 全繼信, 1632년 韓祥·崔義吉, 1635년 洪喜男·崔義吉 등을 거론한 뒤 1636년 洪喜男·姜渭濱 때부터 島主가 江戸로부터 還島하거나 慶弔事의 일로 差倭가 와서 역관의 파견을 요청하면 허락하여 恒例가 되었다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측 기록에는 이외에도 1629년과 1631년 두 차례의 도항기사가 보인다.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조선후기 ‘問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對馬島에 파견된 역관은 1629년 邢僉知와 崔判事가 처음이다. 이들의 파견 목적은 첫째 1629년 도항한 玄方의 答使이었으며, 둘째 대마도주의 還島를 축하하는 것이었다.<sup>47)</sup> 또한, 1631년 10

46) 왜란이 끝난 이후 국교가 재개될 때까지 조선이 대마도에 파견한 사행은 1600년 김달, 1602년 전계신, 1604년 유정, 1606년 전계신 등 4차례였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왜정의 정탐과 국교재개에 대한 의사확인 등으로 <문위>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正使 역시 軍관이나 僧侶로 역관은 아니었다.

47) 《朝鮮通交大紀》 권6, 光雲院公, 《宗氏家譜略》, 《和交覺書》 上 <譯官渡海>

월 譯官 崔判事와 船判事の 도항은 未納公木の 지급이 가뭄으로 인하여 지급하기 어려우므로 己巳년(1629)의 예와 같이 연기할 것을 의논하기 위한 것이었다.<sup>48)</sup> 이들 역시 公木の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보내어졌기 때문에 “문위행”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아울러 조선의 기록에는 같은 해 10월 도주가 대마도에 있지 않으므로 도주에게 서계를 보내는 것은 대마도의 回報를 기다려 보내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역관의 파견을 미루도록 요청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sup>49)</sup> 조선의 기록으로만 본다면 위 사행의 도항을 확인할 수 없다.

조·일 두 나라의 사료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면서, 문위행의 조건-왜학역관의 대마도 파견, 환도·경조사의 문위-을 모두 갖추어 파견된 최초의 역관은 1632년에 파견된 韓祥, 崔義吉이다. 《邊例集要》에 나타난 이들의 파견과정<sup>50)</sup>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파견대상이 對馬島主였다는 것, 둘째 파견목적이 關白의 죽음을 弔慰하는 것이었다는 것, 셋째 堂上官, 堂下官에 倭學譯官이 임명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同文彙考》에 의하면 이들 역관은 禮曹參議의 명의로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書契와 別幅을 지참하였다.<sup>51)</sup>

1632년은 柳川事件이 조선에 알려진 다음 해로, 한상의 파견이 단지 關白의 죽음을 조위하는 것만에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한상 등의 보고를 통해서 조선은 도주 宗義成이 柳川調興에 의해서 江戶幕府에 交隣間의 잘못 13事로 모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52)</sup> 1635년 대마도의 馬上才 파견요청에 조선정부가 쉽게 응한 것 역시 柳川事件과 관련된 對日정책의 일환으로 對馬島主에 대한 조선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다. 1635년 7월 마상재 일행을 데리고 江戶를 왕래한 홍희남은 柳川사건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그해 12월 대마도주는 還島한 뒤(10월 23일, 日曆) 개정된 외교서식(明年號의 사용금지, 大君호칭의 사용)을 통보하면서, 柳川調興이 유배된 상황을 보고하고 역관을 초청하여 島中에 자기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하였다.<sup>53)</sup> 이에 조선은 1636년 2월, 關白의 죽음을 弔慰하고 還島를 問慰하기 위하여 堂上 洪喜男과 堂下 姜渭濱 등 54명을 보냈다. 이후 對馬島主가 還島하여 還島問慰 및 慶弔事로 譯官의 파견을 요청하면, 조선이 倭學譯官 두 명을 正·副使로 임명하여 보내는 “問慰

48) 《宗氏家譜略》 제23대 義成君, 《조선통교대기》 권7 光雲院公, 《和交覺書》 上 譯官 渡海

49) 《邊例集要》 권18 渡海

50) 《邊例集要》 권1 別差倭, 권18 渡海

51) 《同文彙考》 附編 권5 告訢

52) 《증정교린지》 권6 問慰行

53) 《인조실록》 13년 6월 신묘. 《宗氏家譜略》 제23대 義成君, 《증정교린지》 권6 問慰行

行”이 새로운 외교사행으로 정례화하였다.

#### Ⅳ. 朝鮮後期 對日外交使行과 倭學譯官

倭學譯官의 주요 임무는 일본과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言語相通’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왜학역관은 일본과의 외교적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제포·부산·통영·제주·전라좌수영·우수영, 충청수영 등지에 각 1명씩 파견되었으며, 동래부 왜관에는 訓導와 別差를 두어 대일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sup>54)</sup> 그러나 이들 왜학역관의 임무가 단지 ‘언어상통’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래부 왜관에 배치된 훈도와 별차의 경우 왜관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에 대한 1차 보고자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행 파견 등과 관련한 1차 협의 실무진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특히, 일본 막부에 파견된 通信使行을 수행하거나, 問慰行의 당상관으로 대마도에 파견된 왜학역관들의 임무는 외교 최일선의 실무자로서의 성격이 여타의 왜학역관들보다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사행도중에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학역관들의 ‘능력’은 효율적 외교업무의 달성이라는 본래의 임무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였다.

현존하는 『譯科榜目』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격 왜학역관은 총 341명<sup>55)</sup>에 달하였다. 이중 조선후기 대일외교사행에 참여할 수 있는 역관의 수는 사행의 파견이 정기적이 아닌 정례적 사절이었고, 각 사행마다 허용된 인원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일 외교사행에 참여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에 참여한 역관은 당상역관 3인을 포함하여 총 22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통신사행의 총 인원수를 평균 400명으로 가정할 때 5% 정도에 지나지 않는 미미한 수이다. 문위행 역시 총인원 평균 65명 중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6명으로 총 인원대비 10% 미만이었다. 더구나 소통사는 30명 정원으로 왜관의 업무를 맡아 보는 小童과 館直 중에서 차례로 뽑아 훈도와 별차의 업무 수발 및, 왜관의 문서정리, 제반 물품 및 무역품의 관리 등을 업무를 담당하는 倭學生徒로 하급 通事였기 때문에<sup>56)</sup> 실질적으로 사행을 수행하

54) 《通文館志》 권1, 外任

55)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에 의하면 조선후기 譯科의 시행회수는 총 141회이고 342명의 及第者가 배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필자의 計數에 의하면 총 341명이었다.

면서 역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소통사를 제외할 경우 왜학역관의 비중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능력있는 역관의 선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으며, 사행 파견 때마다 역관의 증원 요청이 끊이지를 않았다. 결국 통신사행의 경우 1682년을 기점으로 역관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당상역관과 압물통사가 각 1명씩 증가하였으며, 한학역관의 참여가 압물통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상통사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통신사행이나 문위행의 수행역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敎誨나 聰敏의 직을 가지고 있어야 했으며, 당상역관의 경우는 敎誨와 七事の 직을 거쳐야만 했다. 敎誨는 司譯院에서 가장 뛰어난 역관을 선발하는 것이며,<sup>57)</sup> 七事は 역관이 거쳐야 하는 사역원 내의 관제로 敎誨, 正, 敎授, 御前, 訓導, 上通事, 年少聰敏 등을 말한다.<sup>58)</sup> 즉 통신사행이나 문위행의 당상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역원 내에서 역관이 거쳐야 하는 모든 관제를 거쳐 능력을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자격규정은 당상역관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여 외교업무에 차질을 가져왔다.<sup>59)</sup> 이에 조선정부는 당상역관의 자격을 1685년에 敎誨 및 司譯院正 또는 敎授를 거친 자로 자격규정을 완화하였으며, 1697년에는 敎誨를 거쳐거나 御前通事 혹은 訓導를 비롯하여 1~2개의 履歷을 갖춘 자로 완화하여 이후 定式으로 자리를 잡았다.<sup>60)</sup>

통신사행과 문위행에 함께 참여한 왜학역관은 총 39명으로 통신사행 수행역관 총 99명의 39.4%이며, 문위역관 총 인원 84명의 44.6%에 달하는 수이다.<sup>61)</sup> 통신사행을 수행한 왜학역관들 중 반절 가량이 문위역관으로 대마도를 왕래한 것이다. 통신사행을 수행한 역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통신사행의 堂上譯官 23명 중 19명(82.6%)이 문위행에 참가하였고 그 중 16명은 당상관으로 임명되었다. 上通事は 20명 중 12명(60%)이, 次上通事は 19명 중 7명(36.8%)이 각각 문위역관에 임명되었다. 이로써 보면 대일외교의 업무처리가 소수의 당상역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사행에 동시 참여한 39명의 역관은 조선후기 역과에 급제한 왜학역관 총 341명의 11.4%에 불과하며, 당상역관으로 대일 도항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총 48명으로 14.1%이다. 물론 사행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조선후기 270여년 동안 통신사행 12회, 문위행 54회로 총 63회의 사행이 파견되었다는 점과 외교

56) 《增正交隣志》 권3, 率屬

57) 《通文館志》 권1, 沿革, 等第, 倭學敎誨

58) 위의 책, 沿革, 等第

59) 《숙종실록》 4년 8월 신사

60) 《통문관지》 권1, 沿革, 官制

61) 洪性德, 2000, <朝鮮後期 對日外交使節 問慰行 研究> 《國史館論叢》 93, 145~147쪽

실무에 능하고 뛰어난 어학능력을 갖춘 사람이 당상역관에 임명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0%~15%의 소수 엘리트 역관을 중심으로 對日 외교업무가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학역관은 기본적으로 대일외교에 있어서 1차적인 실무자적 성격을 갖는다. 정책의 결정이나 판단은 동래부사, 경상감사, 예조, 비변사 등의 정책결정라인에서 내려지지만 정책결정을 위한 제반 정보는 대부분이 역관들의 정보와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과 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를 통할 수 있는 왜학역관들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후기 대일 외교사행체제의 성립과정과 왜학역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외교사행은 두 나라의 상호 정책이 표현되는 일차적인 루트이다. 따라서 외교사행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두 나라의 외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한일관계사를 이야기 할 때, 외교사행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다. 단지 통신사행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 연구의 집중에 의한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그 보다는 ‘善隣友好’와 ‘文化交流’의 상징으로서의 통신사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古代와 近現代 압축한 한일관계사를 극복할 수 있는 교훈적인 史實로서 작용한 바가 클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순기능이 외에 한편으로는 보다 실체에 접근한 한일관계사의 성립을 어렵게 만든 부작용이 잠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첫 번째는 조선은 幕府將軍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江戸에 國王使節(通信使行)을 파견하였다는 사실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외교는 쌍방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교류 역시 상호간의 정해진 틀 속에 함께 공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행의 파견 역시 상호간의 관점에서 언급되어야만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통신사의 파견만을 언급할 경우 자칫 일본의 우월적 대응, 즉 조선은 국왕사절을 파견했지만 일본은 국왕사절을 보내지 않았으므로 일본이 상대적 우위에 있었다는 단선적 평가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행과 문위행, 그리고 조선의 대일외교사행체제에 대응하는 일본의 대조선 외교사행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通信使行·問慰行⇔年例送使·大差倭·小差倭의 사행체제를 설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교는 자국의 국내의 정세를 반영한 것이므로 국가간의 관계를 다룰 때에는 상대국의 처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자국내의 상황만을 가지고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해 버리는 것은 동전의 한 면만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17세기 초 한일관계사는 이런 점에서 조선의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하고 있다. 즉 조선은 일본의 교섭요구에 ‘남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응했다는 평가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보다는 조선에서 광해군-인조로 이어지는 정치권력 집단의 변화에 그에 따른 대외정책의 재편이라는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조정권의 등장이후 후금의 성장에 따른 명분외교에서 실리외교로의 전환이 대일교린체제의 재편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외교도 역시 사람들에 의해 유지된다. 특히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어를 통하게 하는 역관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言語相通’을 담당했던 역관들에 대한 분석은 향후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의 인식을 넓히는데 선결해야 할 영역이다.

네 번째, 조선후기 한일관계사는 기본적으로 ‘善隣友好’ ‘誠信交隣’를 바탕으로 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두 나라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적 행위를 추진하려 한 점 역시 다른 시대의 한일관계사에서는 볼 수 없는 긍정적 요소이다. 그러나 倭寇, 倭亂 등 직접적인 충돌과 동북아 정세 속에서의 자국의 안전 보장이라는 현실적 요구들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對等’의 ‘交隣’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어왔다.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고려되지 않고서는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에 대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처럼 조선↔일본이 아닌 朝鮮(국가)↔對馬藩(지역)의 지엽적 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할 것이다.

끝으로, 17세기초 대일외교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自國 중심으로 상대국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歷史的 眞僞 여하에 의한 정책 판단보다는 내부적 헤게모니 장악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명분을 갖추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일관계사연구에서 당 시대 조선과 일본이 각각 상대국의 외교적 행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과거 두 나라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일을 풀어나갔는지를 좀 더 이해한다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사의 정립이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한국 역사교과서의 대일관계 서술 역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토론 녹취문

- 주 제 : 조선후기 대일외교사행과 왜학역관
- 발표자 : 홍성덕 공동연구원
- 일 시 : 2003. 9. 20(14:00-17:30)
- 장 소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 손승철, 정구복, 조광, 한문중, 박재광, 홍성덕
  - 일본측 : 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豊, 米谷均, 橋本雄, 伊藤幸司

## 토론문

손승철 : 그러면 홍선생의 발표에 대하여, 일본측 선생님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吉田 : 내용이전의 문제입니다만, 여기서 합의사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발표 중에서 두 군데, 교과서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 위원회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합의사항이었고, 그것을 전제로 출발하였습니다. 일본교과서의 기술에 대해서, 한국교과서의 기술에 대해서,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더구나 그 일에 관해서 우리 연구결과를 교과서에 반영한다, 시킨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내용과는 관계없는,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디 삭제해 주셔야, 공동연구라는 형식으로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손승철 : 아니, 교과서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언제 합의를 했습니까?

吉田 : 그것은 우리가 위원을 맡을 때의 大前提입니다.

손승철 : 글쎄, 일본쪽에서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일간에 그런 걸 합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吉田 :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서에도 한마디도 써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과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기술내용에 대해서, 뭔가 그, 발언을 한다는 것은 써 있지 않습니다.

손승철 : 아니, 한일역사공동위원회가 어떻게 발족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吉田 : 물론 이 모임은 이른바 교과서문제가 출발점인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체회의, 혹은 분과회의의 진행 중에서 우리가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 직접 검토하던가, 혹은 더구나 연구결과를 교과서에 반영시키던가, 그러한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에서 합의한 적도 없고, 종래 발표 중에서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손승철 : 사무국에서 합의사항 좀 갖다 주세요. 제일 처음의 한일정상 회담서부터 한 합의사항...

정구복 : 발표내용의 삭제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것도, 지금 이 논문이 전체 교과서 문제에 관한 것도 아니고 교과서 상의 통신사에 관한 설명이 잘못돼 있는 것을 조금 지적한 것 가지고, 삭제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발표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요. 이런 것은 승복할 수 없는 거지요. 吉田선생님 처음 일본에서 만났을 때 하곤 틀린데요.

吉田 : 잠깐만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삭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홍성덕씨의 발표가 직접적으로는 외교관계에 대해서 논술하면서 왜 일부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는지, 저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고, 게다가 그것은 우리 사이에서 합의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언급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것입니다. 아마 내용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지 않았습시다. 더구나 전체적으로 이 논문의 가치가 없다던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만은, 우리 합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일부러 넣을 필요는 없다고.

손승철 :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교과서 문제는 그 동안 몇 차례에 합동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 했고, 또 吉田선생님도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년간의 연구 활동 결과를 나중에 보고서로 만들어서 공간을 할 경우에, 그걸 가지고 역사 교과서에 관련하는 사람들이 참고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 그런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역사교과서 문제를 전제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吉田 :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구결과입니다. 연구결과가 아니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승철 :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르지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되지요.

吉田 : 이것은 중요한 일이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일본어판 2페이지. 그럼 한국어판 2페이지, 두 번째 줄.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운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비판을 하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과 외교사 연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연구자 혹은 교육자라면 홍성덕씨의 연구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연구로서 여러 가지 異論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국어 15페이지. 일본어 17페이지. 마지막의 부분인데요. 한국어는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부분입니다. 「한일관계사에 대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 운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국어판에서 제일 마지막에서도. 「한국의 교과서 서술 역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도 검토대상으로서 여기서는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과서 기술도 여기서는 검토대상이라고 그렇게 응용하고 있는 거죠.

손승철 :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는 거지요.

吉田 : 아닙니다. 합의했는지 어떤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정구복 : 선생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과 2차 도쿄회의에서 주제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측하고 한국측간에 우리측은 한일역사의 하나의 문제를 놓고 서로 견해를 달리 하고 있으며, 그리고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문제가 일으키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주장했고, 일본측에서는 위원직을 위촉 받을 때에, 교과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통보받지 않았고, 또한 교과서를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사실을 연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분과에서는 10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이견이 있는 문제와 앞으로 새로이 연구해야 할 것으로 세가지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과서 문제를 왜 다뤘느냐, 이는 다루어져서 안 된다고 하는 요구는 제가 보기에 좀 지나친 요구라고 봅니다.

조광 : 저도 조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 양국, 한일역사공동위원회 합의사항 연구 결과의 활용이라는 사항을 봐야겠습니다. 연구 성과를 배포한다는

구절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 성과 배포를 통해서 본 역사 공동 연구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것을 기대함.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한일 양 국민간의 상호이해가 확대되도록 함. 이를 통해 학자, 전문가, 교과서 회사 등이 보고서 내용을 알게 되어, 장래의 역사 교과서가 편수되는 과정에서 참고로써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이러한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을 한일 양국의 위원들은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신의 연구가 장래 역사 교과서가 편수되는 과정에서 참고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각자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노력의 일환으로 홍성덕 선생이 그의 서문과 결론에 교과서를 언급한 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권한은 연구자인 이상은 한국인 연구자, 동료 연구자거나 상대측 일본인 연구자에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삭제 요구는 재고되었으면 합니다.

吉田 : 우선 이거 확인해 두고 싶은데요, 두 군데, 교과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교과서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학술연구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활용이라고 할 경우, 이것은 그, 우리가 교과서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일의 연구자가 연구한 결과를 역사교육자, 교과서 집필자가 어디까지나 그것을 전문가로서 읽은 다음에 어떻게 교과서의 새로운 내용에 반영시킬 것인가 생각하기 위한, 그러기 위한 참고라는 것이죠.

손승철 : 지금 홍성덕 선생님이 여기 논문에서 밝힌 것은 하나의 문제 제기고,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 입장들을 갖다가 밝혀주면 되는 것이지, 연구자가 문제 제기한 것을 안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만약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호간에 협조해 가면서,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터치해서 이야기 하고 또 안되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만큼만 조금 진도를 나가고 또 안되면 다음기가 3년 후에, 5년 후에 다음기가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 이겁니다.

吉田 : 저도 손승철 선생님에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기본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삭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인입니다.

손승철 : 그래서 일단, 홍선생이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안 받아들이시면 그만이에요.

田代 : 참고로 한다 안 한다는 상대가 결정하는 것으로, 이쪽에서 지도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개선할 수 있다던가, 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던가,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직접 교과서문제에 언급하는 부분은, 이것은 독자를 그 쪽 방향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러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들어가게 하면 우리들은 교과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나 큰 권한을 홍선생님께 부여해 버린다는 점에 대해 그 책임을 개인이 질 수 있는지.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왔을 때 이런 지도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점이 비판대상이 됐을 때 그것을 홍선생님이, 개인 연구자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역시 위원회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六反田 : 짧게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입장인데요, 아니, 저는 이 연구 성과를 그 후의 교과서집필자, 역사교육자가 어떻게 이용하던지 그것은 일본측에서 선택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위한 모임이니까 그 역사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재료가 될 만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제시해 주면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출했을 때 교과서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다던가, 지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구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말았을 때도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말았거든요.

손승철 :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여서 서로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죠. 그런데 일단 저는, 저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집필이, 예를 들어서 교과서가 일본 교과서도 문제가 있고, 한국 교과서도 문제가 있고, 사실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역사교과서를 직접 집필하거나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 쪽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참고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의견, 문제 제시나 의견 제시에 대해서 서로 제안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吉田 : 네, 저도 그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만 하나만 중요한 의견을 얘기하면, 우리는 연구자로서 모인 것이지 역사교육자가 아니고, 역사교과서 집필자도 아니고, 게다가 교육행정 담당자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연구결과를 역사교육자, 교과서집필자에게 제공해 주고, 그들에게 역사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공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입니다. 교과서를, 내용을 이렇게 고치라, 혹은 이게 옳다는 것을 의논하기 위해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 정구복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제2분과는, 당초 출발할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상이가 있었습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합의를 보게 되었으니까 현재까지 연구를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에 여기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의점에 근거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정구복 : 吉田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신 말씀이 전반적으로 대단히 옳습니다. 물론 교과서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거나 교과 행정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시다만. 그런데 역사학자가 연구하는 목적이 그 연구 결과가 교과서에 지금까지 이리이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잘못 서술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은 연구자에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선생이 통신사에 관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 하는 것뿐이고, 교과서 집필자는 반드시 이렇게 쓰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개인의 연구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이 표현이 어디의 뭘 가지고 했느냐,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라든지, 주를 달으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吉田선생이 일반적으로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吉田 : 네, 제가 말하고 싶은 일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교과서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大前提에 抵觸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구복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홍성덕 선생님이 연구한 결과 교과서의 기술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입

각하고 있습니다.

정구복 : 그러면 吉田선생님. 우리가 교과서 문제를 안 다룬다고 합의 본 적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우리 이 위원회에서. 그런 근거가 있으면, 우리 합의사항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 10분정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승철 : 이견 근본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가 서로 합의가 안되면 곤란하니까 일단 쉬지요. 좀 쉬고, 한 10분 정도 쉬고 계속 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1시간정도 정회 후)

손승철 : 자, 그러면 이어서 발표, 토론을 속결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吉田선생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吉田 : 손승철 선생님, 말씀하세요.

손승철 : 아까 얘기한 그 얘기를... 일단 그 홍성덕 선생의 역사 교과서에 관련된 기술 부분을 吉田선생께서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바로 삭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2분과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11월에 전체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측에서 문제를 제기 해주시면 그것을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으로, 그래서 합의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 문제는 일단락 짓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인데, 지금 시간이 4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오전방식으로 토론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혹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면 토론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제의를 해서 이쪽에서 서면 답변을 한다든지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건지, 아니면 계속 토론을 할 건지, 어떻게 할까요.

田代 : 저, 이거 녹음할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오전과 똑같이 해야 한다.

손승철 :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吉田 : 저 말입니다. 이후에 통신사 연구사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장순순 선생님이 안 계실 때에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손승철 : 그래서 서면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왔어요. 자기가 이야기 할 것을...

吉田 :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토론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니까요. 뭐 그것은 받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하는 편이, 장순순 선생님이 계실 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승철 : 그러면 그렇게 하죠. 통신사 연구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에 장선생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하고. 지금 예정이 연구사가 5시까지로 되어 있으니깐 그러면 토론은 5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시간을 정해서...

吉田 : 단 이것은 아주 내용이 풍부해서요. 많기 때문에, 좀 5시까지라는 것은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없고, 모처럼 이 정도의 연구를 짧은 시간으로 끝내버리면 아까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승철 : 원래 토론 시간이 1시간 20분이니까 5시 반까지 하면, 아까도 했잖아요 조금... 좋습니다. 5시 반까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田代 : 그러면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선생님의 논문을 읽어보고,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성덕 선생님의 논문을 읽어보고, 아까 한국어로 설명하셨을 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는데요. 3페이지. 일본어 3페이지 윗쪽에 토비 씨의 논점과 제 논점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연구가 출발되어 있다고 이해했는데요. 대충 35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저어, 이 연구는 20년 전에 『書き替えられた國書』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근세 초기부터 후기까지 일본과 조선이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에 대해 실체를 해명하자는 것이 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근세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柳川事件, 國書改竄事件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나누어서 근세 일조관계가 크게 갈라집니다. 그 속에서 己酉約條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기 위

해 기유약조라는 條文을 더 읽어야 합니다. 이 홍선생님의 주장은 기유약조를 더 중요시해서, 柳川事件 이후에도 그 이전의, 이러한 약조라는 것을 중시해서 일조 관계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쓴 책을 읽어보고, 오늘 《書き替えられた國書》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유약조를 다시 읽어 보구요, 홍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자기 속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점에 있어서 오해를 바탕으로 논리가 성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다섯 가지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인데요, 3페이지에 대일외교의 카운터파트너는 막부이다, 기유약조의, 저, 대일외교의 카운터파트너는 막부였습니다.

그래서 여쭙보고 싶습니다만, 이 己酉約條가 체결될 때까지 數年이 걸립니다. 그리고 약조가 체결된 이후, 江戸시대를 통해 기유약조에 필적할 정도로 큰 약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체결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카운터파트너가 막부였다면 에도막부는 기유약조 체결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혹시 알고 있었다면 그것을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는 약조밖에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맹약이며, 영어로 treaty입니다. 약조라는 것은 사적인 방면, 約契, 영어로 agreement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조와 조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즉, 혹시 막부가 카운터파트너였다면, 이것은 조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막부는 기유약조의 내용 또는 교섭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황을 모두 알고 있지 않으면 카운터파트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도 이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만, 약조를 체결, 조일간에 체결한 상대는 대마도뿐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것은 기유약조 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중세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2쪽에서 3쪽에 걸쳐서 중세부터의 계속성을 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유약조의 조문을 읽어보면, 마지막 조문에 ‘다른 부분, 여러 가지 모든 것은 전례의 약조에 의거한다’고 써 있습니다. 특별히 중세부터의 계승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 기유약조는 중세부터의 약조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어, 5페이지인데요, 특송선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특송선에 대한 이해로 제일 밑에, 주석 부분인데요, 送使約條私記, 雨森芳洲.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11입니다. 送使約條私記는 만약에 雨森芳洲가 쓴 것이라면 이것은 18세기의 이해입니

다. 후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17세기 초반의 일을 해석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送使約條私記는 雨森芳洲가 쓴 것이 아니라 規伯 玄方 즉, 玄蘇 후의 以訃庵 승려가 쓴 것입니다. 玄方은 17세기 초반에 宗義成에게 조일간의 여러 가지 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送使約條私記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문장을 보면, 특송선이 지금 대마도의 所務가 되어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17세기 초인데요, 저어, 특송선에 대한 이해, 즉 이것은 국왕사, 국왕의 명령으로 파견된 배가 아니라, 대마도가 자기 이익을 위해 보낸 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玄方도 앞의 문장에서 과실을 범하고 있는데, 실은 이 특송선이라는 것은 국왕의 명령으로 3년에 한 번 파견되는 국왕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어, 이것도 역시 현방이 틀렸는데, 이것은 17세기 초반에 있어서의 대마도의 상식이라고 할까, 도주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玄方마저 올바른 이해를 못했던 특송선인데요, 실제 중세사 연구 중에서 이 특송선이 15세기에 어떤 목적으로 파견되었는지, 총 88척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연구한 荒木씨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보면 분명히 국왕과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 대마도의 이익단체로써의 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대마도에서 보내지는 세전선의 수는 제한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측으로써는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한한다. 그러면 대마도측은 여러 가지 명목을 세워서 배를 보낸다. 그 가운데 특송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특송선의 실체이며, 그리고 그것이 기유약조라는 이름만 남고, 그래서 세전선 20척 중에 3척이 특송선이라는 그런 상태도 있었다. 그래서 그 중세부터의 흐름 속에서 특송선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그, 전공하시느 차왜에 관해서입니다만 차왜가 5페이지에, 국왕사를 대신한다는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대차왜와 통신사를 동일시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차왜, 특히 대차왜를 막부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막부는 대차왜 파견을,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대차왜와 통신사를 같은 수준에서 의논하면 반대로 통신사의 입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대 외교와 같이 이것과 이것은 같다는, 자유로운 형태로 사자가 파견되지 않았던 전근대에 있어서 이것과 이것은 같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만, 저어, 4페이지에 국왕사에게 문인을 받게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중세에 국왕사가 일본에서 파견되었던 출발 시점에서는 국왕사는 국서, 그리고 割符, 그러니까

쪼개진 부협, 그것을 가진다, 혹은 大內氏는 通信符를 가진다, 즉 문인의 지배는 받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문인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문인의 발해주체는 대마도였으니까 국왕사가 대마도의 의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해가 성립됩니다. 기유약조에 있는, 국왕사는 문인을 받으라고 지시되었다면, 이 국왕사는 낮게 자리매김된 국왕사를 의미한다, 즉 본래 국왕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위사의 시대의 국왕사를 상징해서 조선이 이렇게 문인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승철 :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1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좀 가능하면 다른 분들도 질문을 하고 토론해야 되니까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질문들을 전부 해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의 전제조건의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발제문은 조선정부에서 대마도나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점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아니고, 조선이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느냐가 전체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조와 조약의 차이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근대 이전의 한일관계사에 있어서는 조금 구분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유약조의 성격에 대해서 에도막부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조선정부가 막부정권으로 외교대상으로 삼았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다시로 선생님이 우려하셨듯이 기유약조가 해결되기 전까지의 조선정부의 논의과정을 보면, 특히 회담겸쇄환사가 파견되기 직전의 조선 비변사의 대책을 보면, 조선정부는 일차적으로 막부를 국교재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대마도의 지위에 대한, 일본내의 대마도의 지위에 대한 조선정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회담겸쇄환사가 갔다 온 뒤에, 그래서 조선정부는 대마도를 상대로 국교재개의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막부로부터 또는 막부의 측근들로부터 대마도의 지위를 확인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일본의 막부정권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 특히 豊臣秀頼가 살아있다고 하는 정보, 정보를 때문입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조선은 대마도하고 국교재개 교섭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유약조에 대해서 두 가지의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세의 성격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조선은 대마도하고의 약조체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중세 성격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차이점은 대마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대마도만 대상으로 양국간에 오고가는 사신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국왕사의 문제도 기유약조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왕사를 포함시킨 것은 막부로부터 대마도가 조선과의 모든 통교권을 위임받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송선의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다만 조선의 사료에 의하면 특송선을 여전히 국왕이 보낸 배로, 국왕의 명령을 받아서 보낸 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특송선처럼 대마도의 무역선으로써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것은 회담점쇄환사가 일본에 가서, 특송선의 파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료에 의하면 특송선 얘기를, 玄方이 이야기 하고 있는 특송선의 성격으로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보고할 일이 있을 때만 보내도록 규정한 배로 조선에서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송선이 무역선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서 조선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교업무를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임시사절로써의 차왜를 접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통신사와 대차왜를 동일시한다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단 평가를 미루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와 대차왜를 동일시할 경우에 통신사 지위를 낮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표면적인 체제만을 봤을 때에는 그러한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렸듯이 대마도가 막부로부터 조선과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고 하는 조선후기의 특징이 전제된다면, 통신사와 대차왜를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차왜가 종래의 국왕사 업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당시 조선의 사료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측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부와 대마도사이에 과연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譯官使의 경우에, 대마도는 막부에 역관사의 대마도 도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왜의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철 : 다 끝나셨습니까?

홍성덕 : 예.

손승철 : 네 다시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홍성덕 선생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우선 기회를 드리고, 시간이 나면...

米谷 : 하나만 좀. 저어, 대차왜가 막부의 명령을 받들어 파견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선 외교문서는 대마도주, 대마번주와 예조 사이에 한정 되는 것입니다. 막부 老中이 예조 앞으로 외교문서를 보냈다면 막부의 명령을 받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리고 대차왜를 파견할 때 대마번은 막부에 보고했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전 보고는 안했을 겁니다. 보고가 있었다고 해도 사 후보고였을 겁니다.

손승철 : 자 그러면 요네타니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홍성덕 : 고맙습니다. 요네타니 선생님께서 외교문서를 가지고 대차왜가 관백의 명령 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막부와 예조가 서계를 주고받을 중요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 본적으로 막부정부는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대마도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대차왜의 파견의 사전보고는 없었을 것이다, 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 후보고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종가문서를 확 인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선에 보내는 대차왜가 지참했던 모든 서계는 막부에서 파견했던 以酌庵 승려들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때문에 사전보고가... 대마도가 파견한... 대마도가 파견한 차왜들이 지참한 외교문서는 막부에, 막부가 파견한 이정암 승려, 예 의 해서 관리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전보고나 사후보고의 의미 보다는 막부가 인지 하고 있었다 라는 의미, 그것의 역사적인 사실 보다는 조선측은 막부의 명령을 받아온 차왜로 여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상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米谷 : 조선측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측, 막부 는 자기들이 파견하는 사절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차왜와 일본국왕사를 비교해서, 뭐 비슷한 점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에 있어서의 접대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은 확실히 국왕사 수준의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홍성덕 :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정부에서는 국왕사를 연결한 것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우로 접대를 한 것입니다. 막부와 쓰시마하 고의 관계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마도가 막부의 대조선외교의 전담자로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동격시하는 문제, 통신사와 대차왜를 동격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田代 : 하나만 좀, 여쭙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약조, 기유 약조를 에도막부가 알고 있었는지, 즉 조선측이 카운터파트너라면 막부는 적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국가적인 맹약이 성립됩니다. 막부는 알고 있었나요, 기유약조의 존재를. 에도 말기까지 기유약조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홍성덕 : 에도막부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제 능력으로써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기록들에 의하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간의 관계로 평가의 문제하고, 당시 조선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조선정부는 국가 간의 관계로써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吉田 : 아마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도 평행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성덕 선생님은 조금 전에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실태가 아니라 조선정부, 혹은 조선측에서 일본과 대마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의 카운터파트너의 문제인데요, 저어, 홍성덕 선생님, 홍 선생님의 글에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일본어판 3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한국어판 3페이지 가운데쯤에 「비변사 회계에 따르면 조선의 대일외교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조선정부, 비변사의 생각이 기술되고 있어서, 조선측의 인식으로는 대일외교의 상대방은 막부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네요,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었다는 것이 좋겠군요. 그러한 경우에 국가간의 관계로 조선정부는 인식하므로 기유약조 내용에 대해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부가 이것을 인정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식할 겁니다. 혹시 그것이 없었으면 조선정부가 상대가 막부였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텐데요, 어떠한가요.

홍성덕 : 답변드리겠습니다. 회답검쇄환사, 제1차 회답검쇄환사가 파견되기 전에 비변사의 대책은 생각이 아니고, 조선정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라라고 하는 비변사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회답검쇄환사가 갔을 때, 거듭 말씀드리자면 대마도의 지위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옵니다. 따라서 쓰시마하고 맺은 약조에 대해서 막부의 후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비변사의 결정,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규례를 그대로 쌓아서 다시 專倭를 설치할 순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허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에서도 통렬히 혁파해야 할 일이다.’ 이 부분은 16세기 임진왜란 이전에 국왕사 파견에 대한 실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때문에 대마도의 지위를 확인한 상태에서 막부의 후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시의 조선 관리들의 생각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든 국교를 재개해야 된다고 하는, 재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선정부의 기본 판단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吉田 : 제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이 기유약조에 대해 조선정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것은 정식으로 국가간의 관계라는 식으로 협의하고 결정했습니까?

홍성덕 : 구체적으로 조선정부가 기유약조를 통해서 막부와 국교를 재개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吉田 : 아니, 간단한 질문입니다. 기유약조 내용에 대해 조선정부는 알고 있었는지 물랐는지.

홍성덕 :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吉田 : 그것을 국가간의 관계로 인정했다는 말씀이시죠.

홍성덕 : 회답검쇄환사가 갔을 때, 기유약조의 규약을 들어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유약조를 준수하도록.

米谷 : 죄송합니다. 저기, 저, 회답검쇄환사가 파견된 것은 1607년이지요.

홍성덕 : 2차 회답검쇄환사입니다.

米谷 : 기유약조 체결은 1609년입니다.

홍성덕 : 1617년 회답사입니다.

米谷 : 1617년의 회답검쇄환사에서 기유약조를 준수하라는 요구가 조선측에서 막부에 대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성덕 : 아닙니다. 먼저 다른 질문.

손승철 : 네,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질문이나...

홍성덕 : 1617년 회답검쇄환사로 갔던 이경직이 비변사의 명령을 받고 특송선의 운영에 대한 기유약조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橘智正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米谷 : 그러나 문인을 준수하라고 한 대상인 사람은 대마도인이죠, 막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기유약조는 조선과 막부 사이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조선과 대마도 사이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지금 선생님의 답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덕 : 기유약조의 내용은 대마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만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조선 후기에 국교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조선은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과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는 기본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승철 : 역사 사실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조선정부에서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米谷 : 역사사실로써도 역시 기유약조는 조선정부와 막부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서 형식을 보아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吉田 : 저기, 간단한 질문이고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조선정부가 에도막부와 정식으로 조약을 맺었다, 약조를 맺었다고 이해하신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사료로, 즉 지금 나온 문서형식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실록과 같은 사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요.

손승철 : 아까 몇 가지 얘기했잖습니까.

米谷 :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유약조 본문, 기유약조의 본문은 조선측의 실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春官志라든가,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조선측의 正史인 실록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국가간의 약정으로써의 무거움을 조선이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국가간 조약으로써 인식하고 있었으면 실록에 실렸을 겁니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다. 대마도측의 기록, 그리고 춘관지라는 외교참고서와 같은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홍성덕 :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유약조를 체결할 때, 조선정부가 막부를 상대로 한, 막부를 카운터파트너로 고려했다고 하는 점과 기유약조를 쓰시마하고 체결했다고 하는 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쓰시마하과의 관계로 제한한다면 일본국왕사 규정이 들어간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까 비변사의 결정에 보면, 임진왜란 이전의 국왕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기유약조에 넣은 것은 대마도를 통해서 대일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선정부의 기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료로써 실록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 것에 대해서는 異見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록에 실려 있지 않고, 다른 외교 문서에 실려있다고 해서 그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광해군 일기는 광해군 정권을 부정하는 인조대에 편찬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광해군 일기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평가절하를 할 수는 없습니다.

吉田 : 광해군일기에서 그것을 빠뜨릴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한국 의 사료는 실록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료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래서, 거기서 정식의 외교관계라는 의논으로 게재되고 있는지.

손승철 : 자, 네.

田代 : 저, 아까 국왕사에 대해서 써 있는 것을 큰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기, 아까 질문한 국왕사, 문인을 받은 국왕사, 이것은 중세부터 실체는 그런 것 같았는데요. 문인을 받은 국왕사라는 것은 대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 되는데요.

홍성덕 : 대마도를 통해서 온 국왕사를 인정한다는 의미와 문인을 지참하게 한 田代 선생님의 의견은 조금은 생각하는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왕사의 문제와 차왜의 문제, 특히 대차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그러한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田代 : 다만 이게, 국가의 국왕사가 파견할 사절, 이것은 대마 종씨가 발행하는 여권을 휴대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조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왕사의 위치가 국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선측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정구복 : 거기에 대해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만을, 증명서를 국왕의 사신이라도 대마도 도주가 취급한 문인을 가지고 와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몇 번씩 반복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보낼 때에도 국왕사가 중국에서 보낸 도장을 국왕이 딱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일본 막부에게 우리가 일본 국왕사의 사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문인을 막부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지 국왕사가 대마도주의 허가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六反田 : 아니요, 좀 다릅니다. 죄송한데요, 저기, 그것은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사대 관계와 교린관계라서, 저어, 위치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구복 : 아니, 격식은 사대와 교린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쪽에서 일본 사신을 국왕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도장이 없기 때문에 대마도주의 문인이 지참이 되어야 그걸 국왕사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은 일본의 국내 사정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인데, 일본의 막부체제 하에서 외교를 전담하는 기구와 종래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

있던 것에 주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승철 : 예.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문인의 문제를 이야기 하려면, 아마 위사 문제하고 문인이 왜 만들어졌나 하고, 또 위사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벌써 시간이 5시 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론을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홍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또 일본측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충분히 재고하셔가지고 좋은 논문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후의 홍성덕 선생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박수로 마감을 하고... 5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위원들 세 명씩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또 논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